

『춘추(春秋)』의 전범과 정치 담론: 조선왕조 초기(1392-1420) 자산(子產) 형상의 수용, 번역과 제도화

채묘진(대만 중흥대학 중문과 부교수)

초록

본 논문은 《조선왕조실록》을 핵심 사료로 하여 1392년부터 1450년까지 자산 형상이 《춘추좌전》 속의 역사인물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조선왕조의 제도 정신 준성으로 전화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연구 결과, 종번질서가 긴장된 건국 초기에 명조가 자산의 "선어사명(善於辭命)" 형상을 장인하여 조선 외교문서의 실례를 훈척하고, "수례존국(守禮存國)"의 수사 전범을 "사대" 첫 번째 임무로 삼았으며; 재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조선 조정이 "자산수정, 화불복재(子產修政, 火不復災)" 서사를 활용하여 천상시경을 정치개혁을 일으키는 지렛대로 전변시켰고; 세종조에 예제와 법제 건구를 논의할 때 대신들이 더 나아가 자산의 "예인시이의협경(禮因時而義協經)" 치국지혜를 인용하여 예의규범의 제도화를 주도했으며; 및 논정관맹 등 언론을 통해 "순천리, 인지의, 순인정(循天理, 因地宜, 順人情)"의 이중궤 실천을 형성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과정은 조선왕조가 경연강변, 조칙인용, 사적편찬의 삼중 기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산 형상을 재구축했음을 드러낸다: 그 사람의 "사명" "미재" "권의적시" 등 면향을 부각시켜 중국 경전 인물을 조선 본토 제도변혁의 권위 있는 뒷받침으로 탈바꿈시켰다. 조선조의 자산에 대한 수용은 "경의", "사례", "정책논증"에서 "행정실천"에 이르는 동태적 건구였다: 외래의 "수사-사명" 피동 예의 틀에서 대내적 "덕치-미재"의 정책 설득을 거쳐 "예제-교화"의 주동적 제도 건립에까지 상승했다. 자산 전범의 세 번 등장과 번역은 조선이 단순히 유가 경전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역사인물을 선택함으로써 중국 전적을 조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근거로 전화시켰음을 드러낸다.

핵심어: 자산, 조선, 춘추경, 좌전

제1장 서론

"경험……은 역사 중의 관건적 개념 중 하나"로서, 《춘추》가 동전하여 조선에 이른 것은 단지 경학 지식의 이식이 아니라 조선왕조 치리정신과 정치제도 건구의 사상자원이 되었다. 본 논문은 《조선왕조실록》을 핵심으로 하여 자산(? -522 BC) 형상이 조선조 1392년부터 1450년 사이에 어떻게 사적 인물에서 국가 예제의 정신적 귀의와 정책 실천으로 탈바꿈했는지에 주목하여, 《좌전》 자산 형상이 조선왕조 건국 초기(1392-1450)의 전범화 진정을 고찰한다. 연구자료는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에 실린 경연이나 조정 변란 실록, 및 《국조오례의》, 《장일통요》 등 예서 찬수 문헌으로 하여, 조선왕조 초기의 자산 사적에 대한 전략적 선편과 징용을 해석한다. 동시에 푸코(Michel Foucault)의 "지식-권력" 틀을 운용하여 유가 경학이 어떻게 정책 생산 장역이 되었는지를 고찰한다.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 1928-2018)는 사서 텍스트가 선풍할 때 이미 간택, 정절 안배, 문체나 비유 등 수사로 인해 인물 의미를 형성한다고 여겼다:

역사저작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서사언어구조로서, 단순히 "과거를 환원"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텍스트의 과거 사건에 대한 제시는 과거 자체와 동등하지 않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의 재현을 "구성"한 것이다.

인물 형상은 오직 "무엇을 썼는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무엇을 배제했는가", "누구를 등장시키지 않았는가"에 의해 형성된다.

텍스트의 형식(취재와 수사 배치) 자체가 바로 그 의식형태 내용이다. 따라서 인물 의미는 형식적 선택에 의해 부여된다.

헤이든 화이트의 이러한 논점들은 사학 텍스트가 재료나 시각, 문체, 비유 등 수사

의 취사를 통해 역사 행동자를 식별하기 쉬운 역할과 도덕구조 중에 배치함으로써 인물의 의미와 가치 평단을 형성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례와 경전이 교육, 경연이나 군신 의정을 통해 사인들이 종정한 후 "지식-권력"이 서로 의존하는 운작 자원이 되어 경전 의리가 실행 가능한 규범으로 전화될 수 있게 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지식권력설은 경연제도가 어떻게 경전 천석을 행정 실천으로 전화시키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권력과 지식은 서로 긴밀히 상련되어 있다. 권력관계가 없으면 상응하는 "지식장역"도 없다.

"과학/지식"은 반드시 일종의 화어 실천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항상 기타(정치, 경제 등) 실천과의 상호작용 중에서 운작한다 - 이것이 바로 지식-권력의 상호구성성이다.

이에 준하여, 본 논문은 "경-사-론-정"의 징인모식으로 자산이 《조선왕조실록》 징인에서 보이는 간택, 전화, 실천을 해아려 조선조의 자산에 대한 수용을 관찰한다. 자산은 사전 중의 현신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정책의 유가 의리에 대한 소화흡수를 측정하는 좋은 사례이다. 본 논문의 논술은 대체로 세 개 구역으로 나뉜다: 첫째, 조선조 초 건립 시에 명조가 어떻게 자산의 사령에 능한 형상과 "선사진국(善事晉國)"의 외교 서사를 빌려 종번질서를 확립했는지; 둘째, 재이가 통치 합법성을 동요시킬 때(1401년 한양대화 같은) 조선 조정이 어떻게 "자산수정미재(子産修政弭災)" 사례를 통해 재이천징설을 덕치 서사로 번역하여 내정개혁을 추동했는지; 셋째, 세종조가 어떻게 《춘추》 예의와 《좌전》 사례를 국가 예법제도로 전환했는지이다. 아울러 군신이 어떻게 소대와 조칙 기제를 빌려 지속적으로 국가에 정통의 정당성과 정책의 낙실을 제공했는지를 관찰하는 것 역시 후세 영조시기(1724-1776 재위) 《좌전》 소대에 추널할 수 있는 족적을 남겼다.

제1장 화이질서와 종번관계의 확립: 자산 수사의 인개(1392-1401)

1388년, 고려 우군도통사 이성계(1335-1408; 1392-1398 재위)가 정변을 일으켜 우왕(1365-1389; 1374-1388 재위)을 폐출하고 우왕의 아들 창(1381-1389;

1388-1389 재위)을 왕으로 개립하여 고려왕조의 군정대권을 장악한 후, 다시 왕창을 폐하고 의정군 왕요(1345-1394; 1389-1392 재위)를 공양왕으로 개립했다. 1392년, 다시 공양왕을 폐출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고려는 원래 중원왕조와 누차 왕래가 있었고, 고려조는 비록 불교가 성했지만 성종(961-997; 981-997 재위) 이후 점차 유술을 존승했다. 이때 이성계가 신으로서 군을 시해한 것은 군신의 의에 반하는 것으로, 세력상 의탁할 바가 있어야 명분을 삼을 수 있었기에 명조에 상표하여 국호를 하사해 줄 것을 청했다. 주원장(1328-1398; 1368-1398 재위)이 "동이의 호 중에 오직 조선의 칭이 아름답다"고 하여 이성계가 "조선"을 국명으로 쓰는 것을 허락했다. 이성계는 그리하여 이첨(?-1403)을 사은사로 파견하여 국명을 하사한 은혜에 감사하는 상표를 올렸다. 그러나 주원장은 오히려 사자의 의절이 바르지 않음에 분노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5년(명 태조 홍무 29년, 1396)에, 새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성계는 급히 명조의 책봉고명을 얻어 그 정권의 합법성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명 태조 주원장은 조선 신조의 지위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데 급하지 않았고, 그 요청에 대해 상당히 신중했다. 조선이 정충(1358-1397)을 시켜 사절을 이끌고 명조에 가서 인신과 고명을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명정에서는 조선 사절의 상표 사령이 신중하지 않아 모독을 받았다고 느꼈다며 이를 핑계로 책난했다:

계품사 정충 일행인이 경사에서 와서 예부의 자문을 전하기를:

본부 상서 문극신 등관이 주하기를: "조선국왕이 지문하부사 정충을 보내어 궐에 나아가 인신고명을 청했습니다." 성지를 받들기를: "짐은 중국 상고 제왕으로, 열성이 서로 계승하여 백성을 무어하니 조장이 소저하여 구체적으로 방책에 실려 있다. 그 분모작토의 방에서는 만약 한 령이 나오면 흠준수지하여 약속의 법에 감히 위배함이 없으니, 이는 화하 화내 봉강의 제이다. 그 사린 이적은 풍이 다르고 속이 이하여 각각 추장이 있으나, 모두 분모작토자가 아니다. 고래로 화외라고 칭하여 일찍이 령으로써 인도하고 법으로써 징계한 적이 없었다. 선제 성인들이 힘써 정으로써 하고 탐하지 않음으로써 백성을 즐겁게 하는 것을 숭상했으니, 성인인 까닭이다. 덕이 천하에 포만하고 작에 구등의 분이 있어 안내이무외하니 수의상지치이다. 작구등이란 무엇인가? 후, 전, 남, 채, 위, 만, 이, 진, (번), 빈, 이, 황, 후, 수, 요, 황이다. 이들은

원근을 도량하여 경중을 분별하니, 이는 화내의 소위이다. 그 왕은 끝내 왕이니, 이는 사이를 목하는 덕으로 선성인의 심이니 더 무엇을 가할 것인가! 지금 조선이 당왕의 국에 있어 성이 서로 좋아하여 래왕하니, 완언교사라도 그 자연에 맡겨 둔다. 그 래문에서 인신고명을 관청하는 것은 가볍게 줄 수 없다. 조선은 산을 한계로 하고 바다로 격리되어 천조지설의 동이지방이니 풍이 다르고 속이 다르다. 짐이 만약 인신고명을 사여하여 저들로 하여금 신첩이 되게 한다면 귀신이 감견할 것인데 탐함이 심하지 않겠는가? 상고 성인과 비교하여 약속 일절은 결코 할 수 없다. 짐이 수년 전에 일찍이 저들에게 칙하여 의는 본속을 따르고 법은 구장을 지켜 그 스스로 성교를 듣게 하였다. 기뻐하면 래왕하고 노하면 절행하는 것도 또한 그 자연에 맡겨 둔다. 너 예부는 이모에게 이문하여 짐의 뜻을 알게 하라."

또 자문하기를:

본부 상서 문극신 등관이 흠봉한 성지: "고금으로부터 소로써 대를 섬기는 경의 예는 수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고선성왕의 제에서 열국제후구이팔만이 공하지 않고 왕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수사수문수의를 한다. 이것으로 관찰하건대, 상이 하를 취하고 하가 상을 섬기는 것이 모두 수사에 있다. 옛날 열국이 분쟁을 그치지 않았던 것은 왜인가? 모두 수의수사수문이 구비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을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오직 정에 현상 자산이 있어 사명에 능하여 공벌을 받지 않았다. 무릇 왕래교제 문사의 간에 비심이 초창하고 세속이 토론하며 자우가 수식하고 자산이 윤색하여 상심정밀했다. 이것으로써 제후에 응대하니 패사가 적었다. 지금 조선이 시절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보내어 하표전을 진하니 예가 있는 것 같으나, 문사의 간에 경박사모하고 근일 인신고명을 주청한 장내에 주사를 인용한 것은 더욱 무례하다. 혹 국왕의 본의이거나 혹 신하의 희모인데, 하물며 인신의 구속이 없어 혹 시신을 제봉하여 중도에 개환하는 것도 모두 알 수 없으니, 이로써 래사를 놓아 돌려보낼 수 없다. 만약 찬사교정 인원을 진수 발래한다면 사자가 방회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5년(1396)/권9/3월/29일》)

명 태조는 중국이 고래로 제왕이 천하를 치리하되 분봉한 것은 "화내지국"(화하지내)이고, 사이는 단지 번속으로서 일찍이 정식의 "분모작토"지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조선은 비록 명조와 왕래가 있지만 필경 "동이지방"으로 풍속이 다르고

산해로 저격되어 있으니, 만약 인신고명을 사여한다면 지위를 과도하게 제승하는 것과 같아 그로 하여금 참월하여 분제를 지키지 않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인신고명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단지 조선으로 하여금 "본속구장"을 의순하게 하며, 내조하면 접대하고 오지 않아도 강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또 제2도 자문으로 조선이 거절당한 주인이 사령불신에 있음을 표명했다. 명 태조는 "상이 하를 취하고 하가 상을 섬기는 것이 모두 수사에 있다"고 강조하여,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이므로 조공문서, 교제사령에서 반드시 신중하여 모독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 중에서는 더욱이 번거로워하지 않고 《좌전》 정국 현상 자산이 제신을 동용하여 사령을 제작하고 상심정밀을 역구하였기에 제후에 응대할 때 패사가 없을 수 있었다는 사례를 인용하여 사령이 득체하면 국가가 공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중사로 조선 문서가 "문사경박, 사의모만"하다고 비판하고, 특히 이번에 인신고명을 청할 때 "상주망국"의 전고를 인용하여 기회를 촉범했다고 했다. 따라서 조선이 반드시 문서를 기초, 교정할 책임이 있는 인원을 명정에 파견하여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1396년 조선조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어 외교상 명조와의 종번관계 긴장과 변경분요를 시급히 처리해야 했는데, 이때 자산의 사명에 능한 외교지혜가 중요한 수사소통의 전범이 되었다. 명 태조가 자산의 "사명에 능함"을 척도로 삼아 조선 표전의 문사가 경솔하고 용전이 실당하다고 책하며 엄격한 문서례와 수사규범을 요구한 것은 직접적으로 《춘추》, 《좌전》이 강조하는 수사능력을 "화이지별"과 "종번질서"와 동등시한 것이다.

유사한 사건이 이듬해 또 재발생했다. 명 태조는 원래 조선과 화친을 체결하여 변경을 안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조선이 진상한 안마기물이 저열하여 성의가 부족함을 보였고, 게다가 사자 정도전(1342-1398) 등의 언행이 경만불공하여 명 태조를 극도로 불만스럽게 했다. 드디어 혼의를 파절하고 진헌물을 분훼하며 이왕에게 "소인의 말을 듣지 말고 변혼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해, 사은사 판삼사사 설장수, 부사 중추원부사 신유현, 전 의주도절제사 진충귀, 전 호조전서 양천식 등이 경사에서 돌아와 예부의 자문을 전했다... 또 자문하기를: 본부가 흠봉한 성지: "개국승가에는 소인을 쓰지 말아야 한다. 조선이 새로 조성되

어 쓰는 사람들이 표전에 나타나는데, 이는 삼한 생령의 복이 아니라 삼한의 화수이다. 옛날 중하가 군명을 받아 열토한 자가 만국이었으나, 능히 녹이 자손에게 미치고 세세로 그 토를 지킨 자는 드물었다. 왜인가? 그 소인이 측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별의 법이 쓰였고, 능히 천조와 함께 휴할 수 있는 자는 수국뿐이었다. 또한 정은 일개 소국이었다. 처음 사람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번번이 병정을 받았으나, 후에 자산이 정을 상하니 군자로다 자산이여! 무릇 이문하는 바에 제후방백이 서로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그 말이 망발하지 않고 뜻이 어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산이 끝날 때까지 병화가 없었다. 어찌 그런가? 대개 능히 성의를 제후방백에게 부퍼서 심사숙려하고 하필정미하였기에 초창, 토론, 수식, 윤색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 후에 비로소 행하였으니, 어찌 한 글자라도 사람을 모만할 수 있겠는가! 지금 조선국왕 이(휘)가 쓰는 문인 정도전이라는 자가 왕의 보좌에 무엇을 하는가? 왕이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반드시 화원이 될 것이다. 지금 정충, 노인도, 김약항이 만약 조선에 있다면 반드시 정도전의 우익이 될 것이다. 즉 각인이 이미 초래한 것으로 화가 그 몸에 미쳤으니, 왕은 그것을 심사하라. 만약 정심하지 않으면 국화가 또 장차 발하여 가수어인할 것이다. 너 예부는 조선국왕에게 이문하여 심사숙려하여 삼한을 보전하게 하라."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6년(1397)/권11/하4월/17일》)

사건의 기인은 조선이 천조에 와서 예물을 보냈으나 명조에서 "물품실례"를 검핵하여 "성의부족"을 이유로 조선과의 의친을 정식 취소한 것이다. 명 태조는 조선이 동쪽 변경에 위치하여 중원에 인근하므로 본래 화친으로써 변경을 공고히 하려 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씨 신립정권 후 여러 차례 변혼을 도발했고, 비록 일찍이 사자를 보내어 화친을 담급했지만 조선 방면에서 진상한 안마기물의 품질이 저열하여 성의부족을 보였다. 기왕 "초교가 이미 이와 같으니 장래 반드시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조선과의 혼인지의를 파절하기로 결정하고 예부로 하여금 조선에 "다시 의하지 못한다"고 고지하게 했다. 명 태조는 긴이어서 조선왕 이씨에게 혼유했다 - 입국지초에 소인을 임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고래로 제후들이 많이 소인이 측근에 있어 화란을 초치했으나, 오직 정국 자산 같은 현인이 성신, 근신으로써 치리하여 비로소 병화를 피하고 보국장구할 수 있었다. 지금 조선이 쓰는 정도전, 정충, 노인도(?-?), 김약항

(1353-1397) 등은 모두 간사지배로 반드시 조선 화란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왕이 만약 경각변찰할 수 없다면 국화가 공장 재기할 것이니, 조선왕에게 심사숙려하여 삼한백성을 보전하라고 권했다.

이 단락의 성유에서 명 태조는 또 다시 한 번 은은히 자산 사령의 미션을 제공했다 - "하필정미하였기에 초창, 토론, 수식, 윤색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 후에 비로소 행하였으니, 어찌 한 글자라도 사람을 모만할 수 있겠는가!" 성지 중에서 정국 자산을 현상 전범으로 거론하여 조선이 쓰는 정, 노, 김 등 간사화원과 대비했다. 이후 명 태조가 설장수(1341-1399) 등을 소견하여 조선 방면의 실례, 실신지처를 세수하고, 조선이 화친에 대해 성의가 결여되었다고 여겨 친사를 종지하기로 결정하고 조선왕에게 "소심하여 소인의 발룡을 듣지 말고 사단을 쉬라"고 경고했다.

상술한 두 레의 문서사건으로부터 이씨조선이 명 태조와 초접촉시기에 누차 자산의 선사령을 전범으로 삼아 먼저 자신의 "이행"을 수정해야 종변관계의 체결을 담론할 자격이 있다는 요구를 받았음을 볼 수 있다. 명조가 직접 지시한 "수사", "유례"는 단지 외교예의가 아니라 화이지판, 치국지선이었다. 표면상 이는 외교사건이지만 또한 이씨왕조로 하여금 먼저 내정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문화를 제승하게 독촉하는 것과 같았으니, 자산이 사대하며 먼저 내안한 것과 같았다. 종정지초에 우선 "족대총다"를 이치하고 다시 "도비로 하여금 장이 있게 하고 상하가 복이 있게 하며 전에 봉홀이 있고 려정에 오가 있게" 했다. 명 태조의 삼변양차 자산 징인은 조선의 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강화하여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케이스 젠킨스(Keith Jenkins)가 일찍이 말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우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과거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장해서 말하면, 사증을 인술하는 사람은 더욱이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인술을 통해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건립하는 것이다. 조선 태종시기에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태종 원년(1401) 수창궁 실화로 인해 태종이 "팔사"로 자책하며 직언을 징구했다. 참찬문하부사 권근(1352-1409)이 이를 빌려 진언하여 재이가 많이 인사의 감응에 의한 것으로 상천이 이로써 군주를 경계하여 그가 수덕유위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사례를 거론하여 수덕이 미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태종이 이 재이를 천의의 경시로 삼아야 한다고 권했다. 권근은 "정

유화재, 자산수정"을 비방으로 삼아 "재이-수덕-근정"의 정치적 천인연쇄를 건구하여 초기 경연과 근정노선을 추동했다:

무릇 재이의 일어남은 항상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혹은 일에 앞서 경계를 보이고 혹은 일 후에 벌을 내린다. 천의는 유원하여 진실로 측량하기 어렵지만, 인사를 관찰하면 추지할 수 있다. 고래로 천심은 인군을 인애하여 견고를 창시하니 반드시 보우하여 전안하게 하고자 한다. 그 영명의 자질이 있어 유위할 수 있는 주군이 고상을 순습하고 분발유위하려 하지 않으면 천이 반드시 비상한 액을 내려 경고하여 그로 하여금 공구수성하여 유위하게 한다. 그러므로 상곡이 조에 생겨 고종이 중흥했고, 대목이 뿔혀 주성이 다스렸으며, 정에 화재가 있어 자산이 수정하니 재가 다시 생기지 않았다... 전하께서 처음부터 경학에 유신하시고 언행을 신수하시니 일신의 동작에 어찌 실덕이 있겠습니까? 만약 정령으로 말한다면 일일만기인데 어찌 그 미진 득의한 바가 있음을 알겠습니까? 삼가 진정하건대 정치가 고상을 인순하여 미진합의 하니 전하께서 마땅히 면력수거하실 일이사건을 조열하여 후에 올리오니 복망 수찰 하소서. 일왈 독성효... 이왈 근청정... 삼왈 접조사... 사왈 근경연... 오왈 포절의... 육왈 행려제... 무릇 무사지귀, 려제지법을 일의 《홍무예제》에 의거해 시행... 또한 이 수사는 하기가 심히 어렵지 않으면서 행하기에 심히 유익하니... 복망 전하께서 단연히 행하시어 만세를 다행하게 하소서. (《조선왕조실록/태종실록/원년(1401)/권 1/춘정월/14일》)

권근이 상서하여 태종에게 재이에 직면해 도연히 자책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타서 유위해야 한다고 권하며, 존효, 근정, 접사, 중학, 포의, 행례 등 요항을 열거하여 혁폐흥치, 감격천의하게 했다. 《좌전》이 서술한 자산이 집정할 때 천재신이를 처리하는 수법과 "재불복생"의 효과가 권근에 의해 덕치귀향으로 전화되었다. 헤이든 화이트가 일찍이 지적하기를: "서사는 단순히 중립적인 화어형식이 아니라 본체론과 지식론의 선택과 관련되며 명확한 의식형태, 심지어 구체적인 정치함의를 가진다." 이 관점은 서사형식이 역사서술 중의 주관성과 건구성을 강조하여 서사가 단지 사건의 간단한 재현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천석과 구견으로서 서술자의 가치관과 의식형태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고 지적한다. 권근의 이번 번역은 교묘하게 "천벌"을 "천경"으로 전화시켜 왕권을 직접 부정하는 것을 피했고, 다음으로 "법자산수덕정"으로 후속 정

치개혁과 경연 설립 추동에 포석을 깔았다. 자산 형상이 외교사령에서 내정개혁의 도덕부호로 탈바꿈했으며, 자산 사적이 여기에 이르러 인물전범을 초월하여 국가예법의 천석틀로 승화되었다.

조선 태조시기를 종관하면, 조선이 명조 예부문서를 정록하여 첫 번째로 자산의 "사명에 능함" 사적을 인용하여 종번질서의 장력에 응대했다. 그때 명조와 조선의 관계가 갖 정해져 문서예의 등이 권력박혁의 외현상징이 되었다. 명조가 자산의 신중한 사령, "선사대국"의 서사를 빌려 화이문화위계전략을 건구한 것이니, 즉 자산이 종번관계의 외교수사 중에서 사명전범이 되었으며, 동시에 외확되어 화이구별의 핵심요소가 되어 질서척도가 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조선방이 《조선왕조실록》에 여실히 기록한 것은 또한 "수사이성, 사대이례"로써 번속자각을 선시하여 명조의 그 참월에 대한 의려를 화해한 것과 같다. 조선 태종 원년 한양대화에 이르러 왕조가 천명합법성의 도전에 조우하자, 《태종실록》 권2에 권근이 《좌전》 "자산수정, 화불복제" 전고를 원인하여 조선 재이정치의 경의번역을 개시했고, 자산이 사령신중한 중화문화고인에서 더 나아가 이성척치의 전범이 되었다.

제1장 세종의 예정 실천: 《춘추》 예치로 사회 조정(1410-1429)

본 장은 자산이 조선조 조정 논정 중에서 인용된 서사를 통해 세종(1397-1450; 1418-1450 재위)이 어떻게 유가사상을 구체적인 정치 시행에 납입했는지를 탐토했다. 세종이 어떻게 유가 예학을 의거로 하여 장례제도와 오례체계의 편찬을 추동했는지, 역법, 상장, 일용예속을 국가 치리 틀에 납입함으로써 조선이 상하로부터의 윤리 질서 건구를 실현하고 점차 불교 등 이질문화의 영향을 배제했는지를 다룬다. 《장일통요》와 《국조오례의》의 편찬과정은 경전 천석, 제도화, 정령 보급의 삼방위 합일 경로를 통해 예치질서의 확립과 본토화를 달성한 것이다.

이씨조선이 고려조를 대체하여 섰으므로 고려 불교화의 풍속과 구격해야 했고, 정권은 "명조 책봉"과 "유가 예제"를 빌려 합법성을 강화해야 했다. 그러므로 건국 초부터 주자이학을 국본으로 강조하고 "승유억불" 정책을 추행했다. 지형조사 정이(?-1425) 등이 진언할 때도 주자(1130-1200)의 "예자는 천리의 절문이요 인사의

의칙이다. 진실로 그 예가 없다면 어찌 능히 다스림이 되겠는가?"를 조의예제 추동의 논거로 인용했다.

세종은 조선왕조의 중흥지군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했으며 명조와의 중
번관계가 점차 고정되었다. 대내 치리에서 그는 예제의 확립에 진력하여 예법을 빌려
사회질서를 규범하고 군신부자의 윤리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예의 중에
서 상장습속의 문제가 가장 민정풍속 관리와 관계되었다. 고려조 이래 종교색채가
농후하여 상장이 많이 부화후장의 풍을 따랐고 심지어 왕실과 사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유가이학은 "예이절상"을 강조하여 간약하고 예제에 합함을 추송했다. 후장
과 제다 미신은 "난상패덕"으로 여겨졌기에 신왕조가 이에 진력하여 개혁을 가했고,
이에 세종이 《장일통요》 편찬을 명한 일이 있었다.

《장일통요》의 편찬은 단순한 "역법선일서"가 아니라 세종이 추동한 유가 예치개혁
의 일환이었다. 조선왕조 건국 후 급히 이학예제를 통해 고려 불교풍속을 대체하여
신왕조의 정통성과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했다. 세종조 정국이 안정되어 "예로써 다스
림"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좋았고, 《장일통요》는 바로 이 목표 중의 구체적 산물이었
다. 이 책은 치사한 정이오(1347-1434), 병조판서 조말생(1370-1447), 호조참판
김자지(1367-1435) 등이 공동으로 편찬했는데, 그들이 군주에게 올린 전문을 통해
편写목적과 의의를 명료히 알 수 있다:

신 이오 등이 복승 선지하니 이르기를: "선왕이 예를 제정하여 천자로부터 대부사에
이르기까지 장기가 각각 월수가 있었는데, 후세 음양가가 다기에 구애되어 때를 넘겨
도 장사하지 않으니 내가 심히 민망하다... 마땅히 군서를 두루 열람하고 그 정론을
취하며 그 사설을 제거하여 성현의 지요를 질정하고 속무의 고향을 깨뜨려야 한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음양의 설... 조화의 본을 탐구하지 않고 각기 길흉의 설을
세우니, 그 유가 백가에 이르러 세상을 흑하게 하고 백성을 속임이 심하다... 그렇지
만 고에 진니하여 금에 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해속에 귀하고, 금에 진니하여 고에
통하지 못하면 또한 광세에 유한다. 반드시 고와 금을 참작한 후에 두 가지 폐를 제거
할 수 있다. 이 서는 《예기》, 《춘추》에 실린 장기의 설로써 먼저 한 것은 왕제가 문란
할 수 없음을 명한 것이다. 춘추열국, 한당 제주의 장일로써 다음 한 것은 고자가

장에 날을 택하지 않았음을 본 것이다. 여재의 《서장》, 사마군실의 《장론》으로써 다음 한 것은 세속의 혹을 제거함이다. 청오자가 논한 바와 왕수가 인용한 장기, 주희가 말한 택일, 호순신이 취한 제가 장일로써 다음 한 것은 하나는 종속의 의를 본 것이고 하나는 십전대리일이 모두 장통하여 세속의 구기가 아님을 본 것이다... 사람마다 송사의 대함을 알아 십전대리일로써 선기하지도 않고 후기하지도 않으며 각기 그 친을 장사한다면 인심이 정해지고 왕제가 다시 밝아질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원년(1419)/권3/3월/9일》)

그 전은 먼저 제례원칙을 신명했다 - "경을 본으로", "사를 증으로". 그러므로 먼저 《예기》 《춘추》에 실린 장기, 상복의 제를 최고규범으로 제시하고, 그 후 차제로 열국과 한당 군신의 장일을 거론하여 선현 왕제가 날을 택하지 않았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론을 용으로" 하여 여재의 《서장》, 사마광의 《장론》과 주희, 호순신 등의 민속 장서에 대한 천석과 비판을 채택하여 세심히 해석하고 사설에 대해 비박했으며, "고금참작, 거망존진"을 강조했다. 이 책은 제도확립을 축성하여 세종이 조령으로 중외 제사가 이에 의거해 지방의 "십년미장"의 폐를 혁파하고 "장일은 오직 장통일을 쓴다"고 규정하며 "태세압본명" 등 민간 음양미신을 명확히 금지하여 그 황당함을 파제했다고 요구했다. 결론은 장이 예에 의하면 참월하지 않고 상이 있으면 혹하지 않으니, 금후 예경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위자는 유사가 통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의 편찬은 지식논변을 실행 가능한 행정규장으로 전화시켜 구체적인 장례질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예로써 속을 정한다"는 기본취향을 표시했다: 경전권위로써 가치논리를 확립하고 사사를 증거사례로 삼은 다음 이학논변으로써 도덕과 교화방향을 이청했다. 이 전의 편폭이 극히 길고 편찬자가 강조한 것은 《예기》, 《춘추》의 원칙에 따라 장례시간을 처리하여 사회질서와 예법정통을 회복하고 예교로써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유가문화를 치도와 교화가 결합한 현례로 삼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전문 중에서 자산을 인용하여 "인시제의(因時制宜)"의 정신을 끌어낸 것이다. 이치상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는 규구이고 상이므로, 전문 중에서 《예기》, 《춘추》를 인용하여 장기를 논한 것은 왕제가 문란할 수 없음을 설명한 것이고, 그러므

로 예에 의거해 상을 순행해야 참월하지 않고 또 망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 중에서 또 자산의 사적이나 언론을 징인하여 자산이 예의와 인사안배를 중시하지만 장진길흉을 미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를 장일불구기의 전범으로 삼았다:

《춘추》에서 말하기를: "정자산과 자태숙이 간공을 장사할 때, 그때 사묘대부의 실이 장로에 당했는데, 만약 그 실을 허물면 즉 평조에 봉하고, 그 실을 피하면 일중에 봉한다. 자산이 그 실을 허물고자 하지 않아 일중을 얻고자 했다. 자태숙이 말하기를: '만약 일오시에 이르러 봉한다면 제후, 대부가 와서 회장하는 자들을 오래 수고롭게 할까 두렵다.'" 그런데 자산이 이미 박물군자라 하고 태숙이 제후의 피함을 위한 것이니, 나라의 대사로 상장보다 과한 것이 없는데 반드시 이것이 의에 길흉이 있을 것이니, 이등이 어찌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시의 득실을 묻지 않고 오직 인사의 가부만 논한다.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원년(1419)/권3/3월/9일》)

이 단락의 인용은 자산이 정간공의 장례를 처리할 때 사묘대부의 실을 파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원래 택정한 하장시진을 지연시켜도 실제상황을 보고 영활한 안배를 채택했으며, 길흉시진에 구니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자산이 "박물군자"로서 예의와 인사안배를 중시하고 장일길흉을 미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이를 불구기의 전범으로 삼았다. 자산의 사적을 징인한 것은 주로 고대 예제 중 장례가 시일에 구애되지 않고 마땅히 실제 예의를 중히 여겨야 하며, 후세의 미신적 택일 倣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쓰였다.

세종조 예제개혁과 법제방향에서 제다 예서편찬이 실제로 자산의 "권의행례"의 인시와 실용주의를 채용하여 학계가 상투적으로 조선예제를 단순히 주자학 이식으로 보는 인지를 타파했다. 《장일통요》는 역법과 예제기능을 겸비하여 유가예경정신을 의거로 하고 조선 자유의 역법전통을 융입했다. 편찬목적은 상장예속을 규범하여 백성, 사대부가 모두 의준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논리준비의 서를 현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장일통요》의 추행은 바로 국가가 상하로부터 일용예법의 윤리질서를 규범하는 선도였다. 이는 세종조가 일상생활을 전면적으로 유가규범에 납입하는 정책 실천 중 하나였다. 이 거조는 상장제도를 수정함으로써 점차 불교의식이 장례 중에서

의 영향을 박리하고 유가경전으로 개이하여 유일한 정통의귀로 삼아 조선조에 속하는 "진리정치"를 건구했다.

경연장역이 유가의리로 하여금 정책강제력을 획득하게 했는데, 푸코의 "진리체제"(regime of truth) 이론이 여기서 체현된다. 푸코가 《감옥과 징벌》 제1장에서 "진리체제"라는 개념을 제출했는데, 그는 이렇게 썼다: "진리의 생산과 유통 자체가 권력운作的 일부분이므로 진리는 권력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자유정신의 포상도 아니고 장구고적의 결정도 아니며 더욱이 성공적으로 자아해방한 자들의 특권도 아니다. 진리는 이 세계의 산물이다: 그것은 오직 각종 제약 중에서만 산생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권력의 상규효응을 인발한다. 매개 사회는 모두 그 진리의 체제, 그 진리의 '보편정치'를 가진다 — 즉 그것이 어떤 화어가 승인되어 진으로 운작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그것이 진위를 변별하는 기제와 권위를 건립하며, 그것이 진과 위가 각각 받는 제재를 결정하고, 그것이 어떤 방법과 정서가 진리추구에 유효하다고 인정되는지를 계정하며, 그것이 또한 누가 자격이 있어 선시하고 계정할 수 있는지 — 하자위진인지를 확정한다." 이 개념은 "진리"가 초연객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상호생성하고 긴밀결합하는 사회현상으로서 특정사회가 규칙, 기구, 화어실천을 통해 건구하는 "진리정치"임을 강조한다. 진리는 다중약속을 통해 산생되고 규제적 권력효응을 유발한다. 매개 사회는 모두 그 진리체제를 가진다.

푸코의 "지식-권력" 구조시각으로 보면, 《장일통요》와 《국조오례의》 등 예서의 편찬은 조선조가 장례, 제사, 혼례를 규범함으로써 백성의 생사예의를 "법제화된 예제"에 납입하여 종법윤리를 강화하고 또한 군권의 사회에 대한 통치를 가강한 것이다. 대개 상장례와 종묘제도가 상련되므로 예치개혁이 "부자유친, 군신유의"의 유가윤리를 일상에 깊이 들여 종법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질서를 강화했다.

세종조 예제의 건립이나 개혁이 직면한 근본모순은 기왕 중국유례의 정통을 승계해야 하면서도 조선민속을 조적해야 한다는 데 있었는데, 이때 자산의 "인시제의" 지혜가 파국의 관건이 되었다. 상술한 전문이 자산의 종묘를 훼손하지 않는 존중과 권변지혜를 운용하여 최종적으로 본토예제의 "원교를 존숭하되 또 적시정신이 있다"에 낙실되었다. 이런 조화사유와 "인시제의" 정신이 줄곧 세종의 예정건구 중에 존재했고, 세종의 예에 대한 "제도성과 적시성", "예는 중국구제를 준수하되 재지화조정"의

사고도 멈추지 않았다.

예를 들어 6년(1424), 세종이 대신 허주(1369-1439)에게 대열시 국왕이 반드시 용장을 몸에 입어야 하는지를 詢문했다. 비록 구제가 송조에서 취했지만 세종은 송대가 전란으로 인해 군례에 편중했으나 조선의 현황이 다르므로 조반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왕이 용복을 입는 필요성은 재의할 수 있고, 마땅히 고제를 재고증하여 더 합당한 倣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10년(1428), 총제 이란(?-1428)에게 사제할 때 "예연어정"을 제공했고, 그 후 계임군왕도 여러 차례 "법원천리, 예연인정", "대저예연인정, 역정즉비례", "대저예연인정, 합어정즉합어례의"를 제공했다. 모두 "준제납시" 쌍궐제책략의 체현이다.

현저히 "그 진리에 대한 탐사 중에서 그것이 인지하는 것은 그것이 소위 진리종극이 바로 '해석'"이라는 것이다.

치리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예서를 휘편하고 반행하는 조작을 빌려 장사와 음양사가 독점한 해석권을 정령체계로 수귀시켜 민간술수에서 국가예정으로의 권력 전환을 완성했다. 만약 이를 자산모제와 연결시킨다면 경전인물에서 정책실작에 이르는 "통경-치용" 모식의 하나의 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자산이 《좌전》 중에서 "능히 민정을 절충하되 예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일컬어진 것처럼, "불훼유씨묘"의 거조가 "예를 알고, 예는 사람을 훼손하여 자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진 것을 징인자가 빌려 대경대법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서 장기 형성된 사회풍습을 존중하여 질서조적을 달성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기의 예정이 이런 사로를 연속하여 "인속제례"를 정책설계원칙으로 상승시켰는데, 한편으로는 조례와 의주를 통해 기준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유와 강독으로 사회자각변천을 인도했다.

1430년대 세종이 예조판서 허주와 집현전 제유로 하여금 《국조오례의》를 편찬하게 한 것은 바로 "경을 강으로, 속을 목으로" 하는 논리하에서 계속 진리와 정치의 상의를 상태화한 것이다. 따라서 1419년 《장일통요》를 반발한 것은 단지 일칙 예정 명령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송유이고 예로써 정치하는 시범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경전규범으로 제도혁신을 견인하는 동시에 제도텍스트를 통해 사회교화를 도인했으며, 자산이 《춘추》 전범으로서 구체적 정책의 역사와 예제정신의거를 제공했고, 그 형상이 여기서 이미 역사인물에서 제도변혁의 토템으로 승화되었다.

제1장 신형홀옥과 권시지법: 세종기 법례호보와 명률재지화(1430-1450)

예정과 병행한 것은 세종의 행정척도에 대한 반사였다. 예의 적시조절정신과 동일하게, 설령 율법특색이 조율이 청초한 것이라 해도 세종은 또한 상투적으로 그 적시성이나 집행편차를 반사했다. "사람들의 후속거동을 요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각방 관련인사가 선전의 거조를 어떻게 보는지, 및 그들이 하종방식을 채용하여 가이 묘술하는지를 요해해야 한다. 사람이 행동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일항 공동의 실제고랑에 근원하니, 즉 의도적으로 모종 사물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현시에 관해서는 인간이 보기에 혹은 저해가 되거나 혹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반드시 이를 기석으로 삼아 행동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가가 드디어 시이묘술하는 동시에 또 부여해석하는 중사건을 결성하여 하나의 계열을 이룰 수 있다." 본 장은 세종 군신이 어떻게 행정충면에서 자산을 원인하고, 자산의 "논정관맹"의 사실을 참조로 하여 "의죄종경"과 "신형홀옥"의 원칙을 제출하여 법리중전화의 경향을 규정하고 관맹검고의 법치전략을 형성하여 예와 법이 세종조에서 서로 표리가 되어 예정과 형정이 《춘추》의리를 핵심으로 하는 조적모식을 실현하게 했는지에 관심을 둔다.

세종은 본래 인정으로써 치국핵심을 삼고 특히 사법신중을 중시했다. 세종 7년(1428), 그가 교지를 반포하여 형률의 본지와 집행원칙을 강조하고 법리과도종엄의 폐를 교정하고자 했는데, 그 지에서 말하기를:

형으로써 치를 보하고 룰으로써 형을 단하는 것은 고금의 상전이다. 그렇지만 룰문에 재한 바는 한계가 있으나 사람의 범하는 바는 무궁하다. 이 때문에 형서에 "룰무정조, 인룰비부"의 문이 있다. 무릇 형은 진실로 성현이 신중히 하는 바인데, 상하비부 호리의 제에서 더욱 마땅히 홀해야 하는 바이다. 지금의 법리가 비부의 제에서 솔종중전하니 내가 심히 민망하다. 죄가 경에 의혹하고 중에 의혹하여 정리가 상등한 자는 마땅히 경전을 따르고, 만약 그 정리가 중에 가까운 자는 힘써 법에 합해야 한다. 《서》에서 말하기를: "흠재흠재, 홀형지흠재!"라 하니 내가 복응하는 바이다. 또 말하기를: "식경이유옥, 이장아왕국"이라 하니 유사가 그것을 염해야 한다. 오직 너 형조

는 중외에 효유하라. (《세종실록/7년(1425)/권29/추7월/19일》)

세종이 개종명의로 "형이보치, 룰이단형"을 지적하여 형률이 국가치리에서의 보조 기능을 계정하고 형률이 단지 단순한 징벌도구라는 협애관점을 부정했다. 그는 특별히 집법각판의 편차에 관심을 두어 "죄의종경" 원칙을 강조하고, 또한 제도상에서 법리자의종업의 경향을 약속했다. 아울러 《상서》 "홀형", "경옥"의 어를 인술함으로써 세종이 치옥관념을 유가경전층차로 상승시켜 이로 하여금 경전정통성을 구비하게 하고 그것이 법치실천 중에서의 권위성을 공고히 했다.

이 교지는 조선왕조 사법문화가 명률체계하에서의 재지화조정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중국률령의 규범구조를 승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인정사상으로 그 과엄의 폐를 수정했다. 세종의 이 교지는 단지 구체적 사법실무의 지령일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법치이념의 전현이다. 이런 "인의로써 형벌을 절제한다"는 사법철학은 인정과 법치의 결합을 체현하여 "의즉종경"의 요구를 통해 유가신형사상을 제도화하고, 명률이 조선 응용과정 중에서 비부부당으로 인해 산생한 엄형경향을 교정했다. 기왕률령체계의 제도권위를 유지하면서 또 인정이념으로 과도엄형의 경향을 수정했다. 이로써 세종이 창도한 "의죄종경" 원칙이 유가신형사상을 구체화하여 사법규범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조선률법문화가 중국률령체계하에서 전현한 조적을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종이 12년(1433)에 또 대언 윤수(?-?)와 형옥을 의론하며 형벌이 사생과 관계되므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다. 세종이 고려 말기 안렴사, 병마사가 자살하여 남형이 많이 나왔다고 언급했는데, 태조 개국 후 이 제도를 혁거했지만 여전히 무착을 면하기 어려웠다. 유지하기를 금후 무릇 사죄안건은 마땅히 "양관수령"이 초심한 후 다시 수를 인근 관부로 이송하여 다른 수령이 복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중핵문, 교차복심으로 초술정죄를 피하고, 이 제도를 영원히 항례로 삼을 것을 유령했다.

대약 반개월 후 세종이 또 군신과 "신장"의 폐를 의론했다. 세종은 고제에 "신장불과 본죄"의 법이 있어 고문이 과중하여 사람을 상잔하게 하는 것을 피했다고 여겼다. 지금은 태죄의 사람에게 남시신장하여 왕왕 과도하게 상해한다. 세종이 고제를 복행하고자 했지만 《대명률》에 이 규정이 없어 의려가 있었다. 이로써 세종이 이미 "일응

준률"에 대해 질의를 산생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중에서 권진(1357-1435)은 만약 신장을 제한하면 사람이 모두 통증을 참아 공급하지 않아 옥을 단하기 어려울까 두려워 단지 법관에게 "남용하지 말라"고 고계하면 될 뿐이라고 건의했다. 허주는 이 법이 미선하다고 긍정했지만 《대명률》에 없으므로 수의로 채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세종이 응답하기를 형권이 단지 형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수령에게도 있는데, 만약 명문이 없다면 어찌 오직 "리심"에만 의탁할 수 있겠는가? 《대명률》이 죄량형을 고정했지만 룰외에 여전히 "권의지형"이 있고, 중국황제도 또한 상투적으로 성지로서 룰을 보한다고 했다. 매우 현저히 세종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은 조선이 흑시에 의거해 권변하여 룰례의 부족을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단락의 대화는 세종 법치사유 중의 양난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감형홀민하여 고신과당을 방지하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대명률》의 권위에 제약받아 감히 직행위월하지 못했다. 세종이 "중국상유룰외지형"을 근거로 삼은 것은 실제상 이미 조선왕권이 룰례에 대해 보충과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논증하고 있었다. 이는 단지 그 신행의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선이 명률에 의부하는 것과 자주입법을 추구하는 것 사이의 장력을 반영한다.

세종 13년(1434), 숙천군수 김경(?-?), 홍주판관 김숙점(?-?)이 부임하려 할 때 세종이 소견하며 당부하기를: "평안도가 근래 사신왕래로 인해 민생이 소요하고, 충청도가 금년 화곡이 등숙하지 못했으니, 각기 마음을 다해 민생을 홀하고 또한 형벌을 신중히 하라." 그 당부에는 인민의 마음 외에도 은연중 앞서 서술한 자산수정방재 "재이-수덕-근정"의 정치논리를 지속적으로 납입했는데, 즉 "신행과 수덕"이 홀민의 구체적 작위이고 또한 화곡불등 등 천재에 응답하는 근정지위로서, 30여 년 전 태종 즉위지초에 권근이 자산수정미재로 번역한 수덕지론을 재차 복송한 것과 같다.

동년 허주가 형옥부납문제를 상언했다. 허주가 중외치옥지리가 용형이 신중하지 않아 무죄와 경죄자에게 남급한다고 언급하여 형벌을 가볍게 쓸 수 없다고 간언하고, 마땅히 형조에 관원을 증설하여 룰문을 상고하고 형벌을 신용하여 민명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다. 세종이 그 뜻에 인동하여 형벌은 부득이해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또한 덕치가 부족하면 형을 여전히 폐할 수 없다고 지체했다:

신유... 찬성 허주가 계하기를: "지금 중외치옥지리가 성형에 힘쓰지 않고 남연지당 하여 무죄자가 혹 태장을 받고 경죄자도 또한 중형을 받습니다. 신이 중야에 앉아 반복 사지하니 형자는 다시 벗을 수 없고 사자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원컨대 형조에 관원을 가설하여 물문을 정고하고 극신용형하여 민명을 중히 여기소서." 상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형벌은 성인이 심히 중히 여기는 바로 부득이한 후에 이를 쓴다. 그러나 기왕 능히 덕으로써 다스리지 못하고 또 형을 쓰지 않으면 내가 기강이 능이 할까 두렵다." 주가 말하기를: "어찌 전문적으로 형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명신에 힘쓸 뿐입니다." 상이 그렇다고 했다. (《세종실록/12년(1430)/권50/11월/24일》)

허주의 이 계는 형벌의 과남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신형이중민명(愼刑以重民命)"을 주장하고 유가의 "형기어무형(刑期於無刑)"의 이로를 계승했다. 세종의 응답은 기왕 제도조작의 편리를 고려하면서도 신언을 접납할 수 있어 그 절충권형의 치정자태를 전현했다.

몇 년 후 전 형조판서 신개(?-?)가 복상과 병질로 인해 공직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당시 사회에 도적이 횡행하여 경성과 지방이 거의 녁일이 없고 백성들이 원언이 사기하며 국가가 "도적을 아껴 죽이지 않아" 가산을 보전할 수 없다고 책망하는 것을 보았다. 신개가 이로 인해 상서하여 력권미도했는데, 그는 도적이 많이 유태피역의 사람들이 결당하여 일어난 것으로 교활하여 방어하기 어렵고, 또한 절도와 강도가 왕왕 상통한다고 여겼다. 현행률례가 절도에 대한 처벌이 과경하여 장문이 한계가 있고 누포누범하여 도성순환하니, 서문 중에서 자산과 공자의 말을 원인하여 치리에는 "관맹상제"가 필요하고 도적에 대해서는 특히 마땅히 중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관중이 도적이 자행하게 하여 민불료생하니, 오직 "이형지형, 이살지살"해야 비로소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미도의 방은 고래로 어려웠다. 선치자는 비록 형을 숭상하지 않지만 도적에 대해서는 솔행엄중했다. 옛날 정자산이 질병이 있어 자태숙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으면 자가 반드시 정치를 할 것이다. 오직 덕이 있는 자만이 능히 관으로써 백성을 복종시킬

수 있고, 그 다음은 맹만 못하다. 무릇 화가 열렬하면 백성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므로 죽는 자가 적고, 물이 나약하면 백성이 익숙해하고 완롱하므로 죽는 자가 많으니, 그러므로 관이 어렵다"고 했다. 수개월 후 졸했다. 태숙이 정치하며 맹을 차마하지 못하고 관했더니 정국에 도적이 많아 환포의 태에서 사람을 취했다. 태숙이 후회하여 말하기를: "일찍 부자를 따랐더라면 이에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도병을 일으켜 환포의 도적을 공격하여 진살했더니 도적이 조금 그쳤다. 중니가 말하기를: "정이 관하면 백성이 만하고, 만하면 맹으로써 규정하며, 맹하면 백성이 잔하고, 잔하면 관으로써 시행한다. 관이맹을 제하고 맹이관을 제하여 정이 이로써 화한다"고 했다. 자산이 졸하자 중니가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고의 유애이다"라고 했다. 지금 적이 되는 사람을 관찰하니 한약의 우자가 아닌 이가 없어 감히 사람이 감히 하지 않는 바를 행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절도로 장증이 명백한 자는 고신이 본죄를 과해도 가하고, 삼범정상이 심중한 자는 사유에 구애되지 않아도 가하다. 고인이 말하기를: "이형지형, 이살지살"이라 했다. 중니의 훈, 자산의 계가 지금 구폐에 있어서는 행할 수 있는 것 같다... (《세종실록/17년(1435)/권68/6월/14일》)

겨우 5년 만에 신개가 진한 바가 허주의 관형지론과 정반대였지만, 양자를 병진하여 바로 세종조가 "엄형과 관형"의 법치결택에 직면했음을 전현할 수 있다. 신개가 자산과 공자를 인용함으로써 엄형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사회실정과 결합하여 중징지의의를 제출했다. 전장에서 예제를 의론할 때 자산을 징인한 것과 같이, 여기서 용형의 사유도 조선 초기가 질서유지와 법치체제 건구상에서의 권의사유를 반영했는데, 도적이 횡행할 때 엄형으로 시폐를 구했다. 이 주의는 후래 "관맹지형", "권시지법"을 토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하술 사례는 더욱 세종조에서 법제와 윤리가 충돌할 때 용법에 대한 권의적시교량을 반영할 수 있다:

갑인년 이후 중외 체육미결 사수 190인에 대해 상이 특히 민망해하여 의정부에 전교하기를:

근년 이래 기근이 거듭 이르러 도적이 흥행하고 분쟁이 자번하니 사육이 많은 것이 고에 비해 배가 되어 내가 가만히 괴치하고 깊이 자극려한다... 이에 그 정법이 의심

스러운 자를 택하여 특가관대하여 서기 죽는 자의 수를 조금 감하고자 한다. 만약 투구살인자는 비록 분쟁으로 인하지만 실무살인지의가 있으니 그 중에 어찌 정상이가장 경하여 가공할 만한 자가 없겠는가? 그러나 룰문에 회살자는 본래 해인지의가 없어 회로 인해 우연히 살인에 이를 뿐이므로 특히 그 죽는 자를 긍휼히 여겨 오히려 그 죽음을 갚게 하는데, 하물며 구상자에게서라? 또한 균히 살인자인데 혹 죽이고 혹 감하면 미안함이 있을까 두렵다. 만약 절도거포는 비록 룰이 응당 처사하지만 그 중에 흘피물주추포하여 무심해인하고 단요탈면하려고 창졸거포하여 중상에 이르지 않은 것은 정도 가서할 만하다. 또 삼범절도와 도관전량자 같은 것도 또한 마땅히 처사하지만 모두 해인지죄가 아니다. 또 하물며 절도가 많은 것이 실위근년기근의 소치이니 더욱 가공하다. 이등의 소범을 장육특감하여 흠휼지의를 시하고자 하나, 또 후일 드디어 격례가 되어 다시 룰문을 종할 이가 없을까 려하니 이는 고식지정으로 또한 미안하다. 하이사활법행이사자조감여? 그 강고룰조하고 참작사의하여 의의이계하라.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개, 찬성 이맹전, 성억, 참찬 하연 등이 의제하기를: "선왕의 의형의살은 일인을 형하여 억조지인을 두렵게 하여 감히 위악에 사의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니, 이는 곧 정직보익이고 만약 그 유상지성이다. 이로써 경형을 아니 간사를 해하여 선류를 해하고 치도에 해가 있음을 안다. 주문공이 말하기를: '속유고식지언, 속리자영지계가 일이경형위사하나 형이 더욱 경해질수록 반이그 패역작란지심을 장하게 하여 옥송이 더욱 번하게 한다'고 했다... 또한 《대명룰》과 《당룰》이 병히 이삼죄가원지문이 없으니 룰을 사하고 행하는 것도 또한 이에 어긋난다... 옛날 정자산이 화열민외, 수약민흡의 훈이 있었는데 태숙이 따르지 않아 마침내 병을 일으켜 도적을 공격하여 진살하는 거가 있었으니, 경형의 폐는 고에도 있었다... 만약 사형이 많다고 하여 더욱 활법을 행한다면 이는 위악지인을 차마하지 못하고 반이무고피도지인을 차마하는 것이다." (《세종실록/21년(1439)/권87/12월/15일》)

문중에서 갑인년(1434) 이래 조선의 체옥미결 사수가 190인까지 누적되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사회에 기황이 심각하고 도적이 자생하여 원옥과 사형안건이 배증했다.

군왕이 인자감형을 주장하여 "무살인의도의 투절이나 쟁집상인", "투구(구)살인"이나 "투절저포"자에 대해 모두 고의살인이 아니므로 작정감면할 수 있다고 했고, 삼범절도와 도관전량자는 비록 응당 사형이지만 정에 의거해 경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세종도 만약 제도화 관례를 형성하면 법률위하를 약화시켜 범법이 증다하게 할 수 있을까 고려하여 제신들을 소래하여 대책을 상의했다.

의정대신들이 엄형을 주장하여 형벌의 설치가 바로 민중을 진섭하여 작악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신언했다. 경형은 불량한 사람들을 혜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작악하게 할 수 있다. 《대명률》과 《당률》이 모두 사형감면삼죄의 규정이 없는데, 만약 자행감형한다면 물법을 위배하는 것과 같다. 비록 기황투절 등 특례상황시에 참작할 수 있지만 삼범은 여전히 가볍게 서할 수 없다. 대신들이 정자산과 태숙의 역사경험을 인용하여 경형이 치란풍함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시했다. "만약 도적을 징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통분하여 천이 반드시 염오하고 재변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은 사형이 과다한 것이 비록 사람을 담우하게 하지만 수의로 감형하면 사회불안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정의 이후 감형 여부는 논외로 하고, 이칙 국가의 사형과 형벌집행에 대한 의정기사는 당시 조정이 기근, 도적증다 상황하에서 사형감면에 대한 토론을 계동한 것을 반영하며, 그 "인시수법"의 용심이 매우 역사가치가 있다.

더 초기 조선조의 예제와 법제에 대한 보수경향과 비교하면, 세종조의 "인시제"의 정신은 가귀하고 자주성이 더 많다. 예를 들어 태종 3년(1403) 사간원이 시무를 진할 때 마땅히 권신지도가 "용지희신"으로 망개구장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소문이 전대제도은행원칙을 회고하여 무릇 신법과 관직을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대성심의를 거쳐 의리에 합함을 확인한 후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신지도가 "용지희신"으로 망개구장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왕조가 500년을 연속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태조 개국 후 《경제육전》을 제정하여 자손을 위해 치리의 근본전범을 세웠다. 세종이 이 통치지도를 계승하여 교조를 반할 때마다 반드시 《육전》과 상참합하여 "선계선술"의 덕정을 보였다. 그러나 장래 만약 변혁을 좋아하는 신이 있다면 수의로 성법을 개동하여 구제를 파괴할 것이므로, 사간원이 건의하기를 설령 《육전》에 재하지 않은 일을 만나더라도 이미 있는 법률도

수의로 변동할 수 없고, 만약 부득이 개제하거나 신법을 세워야 한다면 반드시 구제를 순하여 대간의정 후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에 "육변구장", "선계선술", "변란구장", "이성지법, 무득분갱", "의전조구제", "의첩이시행" 등 구전을 준수하라는 당부가 가득하다.

반관하건대 세종이 1430-1450년간 대신과의 사법과 정무에 관련된 대화와 교유에서 "자산"을 가용한 경전모제로 삼아 "예이도지, 법이성지"의 치리이념을 관통했다. 그 핵심은 단향의 관이나 맹이 아니라 《춘추》 의리를 축으로 하여 시제의하는 제도조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신형홀옥, 의죄종경"으로 엄형화경향을 절제하여 법도로 하여금 인정에 복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적이 창궐하고 민생이 실서할 때 또한 자산수화지훈을 원인하여 잠용중전으로 질서를 복구했다. 이런 "법례호보"는 단지 절충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사례와 판단원칙을 통해 사법규범으로 낙실되었다.

제도면에서 세종이 교지를 빌려 인정이념을 실행 가능한 판안표준으로 번역했다 — "형이보치, 룰이단형"으로 법의 보조속성을 계정하고 "의죄종경" "신형홀옥"의 원칙을 명정하여 리치의 "술종중전" 적습을 규정했으며, 복심의 교차심리절차를 통해 초술정죄를 피했고, 신장남용을 검토할 때 《대명률》 밖에서 여전히 "권시지법"과 왕명보충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이로써 조선이 명률권위를 승수하는 동시에 이미 시국, 왕권교지로서 룰법형서각판지폐를 교정하는 것을 계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사들도 세종조가 "관맹치리"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의 초조를 정현했다. 사회환경이 악화되고 사수가 적압될 때 조정이 한편으로는 "관이감기수"에 정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형이 간궤를 조장할 것을 우심했다. 주의 중에서 자산의 "화열/수나" 비유와 공자의 "관이제맹, 맹이제관"의 훈이 서로 랍거했고, 사책도 평형적으로 허주와 신개의 "신형중민명위선", "이형지형, 이살지살"이라는 두 가지 전연 다른 의견을 녹아냈다.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 노향이 모두 자산을 근거로 할 수 있어 자산모제가 세종정치화어 중의 쌍향가용성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왕 형벌을 절제하는 도덕예절의 닳이면서 또한 비상시기 중전의 정당성원천이 될 수 있다.

"역사와 우리의 가치가 상견련된다. 우리가 모종 부분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중에서 이러한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종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논술모식을 순환시켜 운작하며, 형의 용이 "식시무명치도"해야 한다고 강조하

는 것 외에는 없었다:

전에 말하기를: "치국용경전, 란국용중전"이라 했다. 지금의 세상은 극란이라 할 수 있고 치가 아니다. 국가승평백년에 침감성습하여 비록 양법미제가 있어도 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그 약속을 엄하게 하고 그 룰명을 중하게 한 후에야 민이 령에 취할 수 있고 속이 법을 외할 수 있다. 옛날 정자산이 자대숙을 계하여 맹을 숭상했고, 제갈무후의 촉을 다스림도 또한 엄맹을 숭상했으니, 모두 시무를 식하고 치도를 명한 의이다. (《승정원일기/영종/4월10일27》 #03600)

종합적으로 말하면, 1430-1450년간 조선조의 사법토론에 이르러 "자산-인정-법도" 삼자가 하나의 순환 가능한 상호의존구조를 형성했다: 예로써 가치와 논리를 재정하고, 법으로써 절차와 가예측성을 보증하며, 왕명으로써 룰레의 부족을 조절했다. 자산이 여기서 더 이상 단지 덕정표찰이 아니라 제도번역의 추뉴가 되었다 — 그것이 《춘추》 의리를 심판원칙과 판안유정에 도입했으며, 또한 재지수법과 임시권변에 경전근거를 제공했다. 이 "경교룰, 예절법, 권시보지"의 경로는 바로 세종조 형률문화가 명률체계하에서의 조선식 조적이며, 또한 명확히 자산(혹은 유가사상)이 "타자전범에서 본국정치어휘로"의 연변경로를 전시했다.

제1장 결론: "타자의 전범"에서 "본국의 어법"으로

본 논문은 1392-1450년간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이는 자산 형상의 인용과 점차 제도정신의 귀의가 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이로써 "춘추전범"이 어떻게 왕조건국 초기에 치리어휘와 정책자본이 되었는지를 탐문했다. 본 연구로부터 자산의 조선 전기 수용이 단선적 관념이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산이 《좌전》에서 조선 조령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은 실로 "경학의리→역사사례→정책논변→제도텍스트"의 연속적 번역 추진이며, 그 역시대세는 대체로 세 개 시기를 정현한다: 첫째, 건국초기 화이질서를 배경으로 한 수사-사명 틀; 둘째, 태종조가 재이정치를 빌려 형성한 덕치-미재 논증;

셋째, 세종조가 《춘추》 의리를 예제-교화와 법례호보의 제도로 확전시킨 것이다. 이 연진은 기왕 《좌전》 인물이 조선 어경 중에서의 중술과 중편을 게시하고, 또한 국가가 어떻게 경전의리를 치리조치로 전화시켜 최종적으로 조작 가능한 구체적 예법정책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1396년 명정이 자산의 "사명에 능함"을 척도로 삼아 조선 소표의 실례를 신척하고 문서수사와 종변질서를 긴밀히 방정했으며, 《조선왕조실록》이 사실대로 등재한 것은 자아서술 중에서 "수사이성, 사대이례"의 규훈을 승인하고 내화한 것과 같다. 자산이 이로 인해 외교화어 중에 안치되어 소방자처지술과 예제변계의 권위규범이 되었다. 여기서의 "자산"은 화이, 종변화어질서의 척도이지 단순한 역사인물이 아니다.

1401년 권근이 "정유화재, 자산수정, 재불복생"을 비부로 삼아 천전을 수덕계기로 전석하여 "재이-수덕-근정"이 정치주향을 추동하는 명등이 되게 했다. 자산이 이로써 대외의 수사전범에서 대내의 덕정상징으로 전했다. 세종조에 이르러 이 덕정어법이 제도층면에 치환되었다: 1419년 《장일통요》 편찬을 명하여 "경을 본으로, 사를 증으로, 론을 용으로" 하는 논술모식으로 음양구기를 파제하고 "예로써 속을 정한다"는 것을 국가치리의 상태기제로 정착시켰다. 경전권위와 사사증거가 여기서 실행 가능한 장절조목으로 편코드되어 조선 교화가 민속해석권에서 예정체계로 전입되었음을 표지한다.

1430-1450년간 세종 군신이 형정의제에서 자산의 관맹지정과 수화지유를 형량표준으로 삼아, 한편으로는 "형이보치, 물이단형"과 "의죄종경, 신형홀옥"을 제출하여 종엄비부의 유폐를 절제하고 복심 등 절차설계로 인정을 낙신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적이 극증하고 질서가 실행할 때 또 "관맹상제" "이형지형"의 설을 원인하여 비상지법으로 비상지시에 응답했다. 이에 "예절법, 법필례"가 드디어 세종기의 치리어법이 되었다.

상술한 삼시기의 전환은 할열이 아니라 서로 체진하고 호증하는 것이다: 외교수사가 "합법성과 예계"의 외재 틀을 제공했고, 재이서사가 자산을 사령표현 등 외재약속에서 "덕치-근정"의 내재귀의로 전했으며, 예정-법정의 제도화는 자산의 예와 법에 대한 사상이 조선왕조가 지속적으로 의순할 수 있는 치리전범이 되게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종시기의 법례호보가 바로 자산의 권변정신을 장악하고 발휘하여 예서와

룰레의 가능한 고화를 구제하고, "권시지법" 사유와 변증이 《대명률》의 권위로 하여금 조선 어경 중에서 "재지화"되게 하고 피동적으로 접수되지 않게 한 것이다.

자산 서사가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칭인된 것은 사적의 선록, 편찬, 천석 자체가 곧 규훈작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산선제사령", "수덕미재", "불훼유씨묘이견예위지례", "논증관맹" 등 단락을 적절한 정치시기에 강화함으로써 조선 사인들이 자산을 "법치개혁자"에서 "덕치와 예정의 추뉴"로 재소하여 인물모제가 어떻게 정치 권력구조 중에서 "진리"의 인정을 획치하는지를 설명한다. 바꿔 말하면 자산이 시정 전범이 되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 다중장역에서 반복적으로 나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것이 기왕 수사척도이면서 또한 덕치증성이고, 또한 예정과 행정의 방효대상이다.

종합하면, 조선 전기의 자산에 대한 수용은 "전범차대"와 "진리정치어휘생성"의 이중과정이었다: 자산이 "타자로서의 중화현상"에서 출발하여 재이의 덕치천해, 예제전화, 및 행정의제의 권시고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선 정치문화가 즉시 조도할 수 있는 본국 정치부호로 침전되었다. 단지 "화이질서" 단향피동준수의 비굴을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경전재천석을 통해 자산의 "소국외교술"을 보세치국지혜로 승화시켰으니, 그 역사의의는 단지 유학사상의 전파를 완성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전의리에서 치용으로 통하는 가순경로를 개착한 데 있어 "경교를, 예절법, 권시보지"가 전속 가능한 논술모식과 정책이 되게 했다.

이는 또한 후세에 이르기까지 조정이 "관맹지형"의 결택에 직면할 때 여전히 자산을 공동어휘와 권위자원의 소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해석한다. 본 연구는 자산의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중의 관건적 지위를 재구할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가 주동적으로 화하경전을 증석하고 자주화어권을 건구하는 능동성을 증성했다. 자산 사적의 동점지여는 실로 조선이 중국 경전을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이 경사를 정책자본으로, 서사를 권력실천으로 삼은 것은 단지 유학의 동아시아에서의 가치를 전현했을 뿐만 아니라 전근대 국가가 어떻게 외래문명을 전화시키는지에 대한 범식을 제공했다. 이런 "통경치용"의 모식은 동아시아 유가문화권의 전파와 변모를 이해하는 데 모두 계시의의가 있다.